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성 북 구
(여성가족과)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안 번호	477
----------	-----

제출년월 : 2025년 6월
제출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미래의 주역인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맞벌이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여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기존에 운영 중인 국공립어린이집 중 위탁기간이 2025년에 만료되는 시설의 재위탁을 추진 하기에 앞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위탁 대상 시설

연번	시설명 (원장)	소재지 (행정동)	현 위탁체 (대표자)	정원/현원	현 위탁기간
1	길음성가 (박설희)	길음로9길50 (길음제1동)	재단법인 성가소비녀회 (나경숙)	76/60	2021.01.01. ~ 2025.12.31.
2	푸른성북 (김수정)	지봉로23길51 (보문동)	사단법인 여성중앙회 (김영남)	42/25	
3	경동 (안미진)	고려대로14길42 (안암동)	대한감리회유지재단 경동교회 (한병희)	27/14	
4	소리 (이혜경)	오패산로98-12 (월곡1동)	개 인 (이혜경)	99/90	2021.03.01. ~ 2026.02.28.
5	동심뻘아제 (이복순)	송인로2길61 (길음2동)	개 인 (이복순)	20/14	

연번	시설명 (원장)	소재지 (행정동)	현 위탁체 (대표자)	정원/현원	현 위탁기간
6	자연아이 (최유경)	돌곶이로40길46 (장위1동)	개 인 (최유경)	85/70	
7	키노 (최근화)	정릉로26길8 (정릉2동)	개 인 (최근화)	20/10	
8	해오름 (박정숙)	오패산로46 (월곡1동)	개 인 (박정숙)	20/17	

1) 위탁기간 : 위탁기간 만료일 이후로부터 5년(예정)

2) 수탁기관 선정 : 2025년 제2차, 제3차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한 재위탁 여부 선정

나. 위탁 사업의 범위

- 1)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
- 2) 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 3)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8. 1. 17., 2011. 6. 7., 2011. 8. 4., 2018. 12. 11., 2020. 12. 29.>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2)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타당성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 때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